

2021년도 제1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3.(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2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05건(안건번호 제2021-60584호~6112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60584호~60590호(순번 1번~7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출판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출판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60591호(순번 8번)는 블로그에서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60592호(순번 9번)는 타인이 원저작물을 편곡, 채보한 악보를 일부 복제·전송하고 전부에 대하여 직접링크를 설정한 사안으로, 복제·전송대상인 악보가 공정이용에 해당하거나 합법시장의 대체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게시물이 악보의 극히 일부를 제공하고 있고 직접링크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60593호(순번 10번)는 카페 댓글에 이메일을 기재하면 음원 모음집을 보내주겠다는 사안으로, 게시자가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60594호~61129호(순번 11번~546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99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684개에 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 2021-5555호~6238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 중 2021. 6. 3. 현재 접속가능한 4개 사이트의 587개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2021. 6. 3. 현재 접속이 되지 않는 1개 사이트의 97개의 URL 정보에 대해서는 부결함.

III. 회의 의사록

1. 개최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최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2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께서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00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546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7번은 실명(3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출판물을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물 '○○○○○', '◇◇◇◇◇', '△△△△△' 등을 각각 50포인트에서 8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7개 게시물임.

(순번 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8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46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7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7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8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에서 만화 '□□□□□'를 제공한 사안임. 1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8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만화 '□□□□□□' 제1부 제1화의 전체분량을 제공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

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9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에서 음악 '▲▲▲▲▲'의 악보 일부를 제공한 사안임. 1개의 게시물임. (순번 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타인이 연주한 해당 음악의 피아노 어레인지 버전 동영상, 타인이 채보한 피아노 어레인지 버전 악보 2분의 1쪽 가량의 미리보기, 채보자의 ★★★★★ 채널 링크와 연주 동영상, 전체 악보 pdf파일의 ▲▲▲▲▲ 링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고가 삽입되어 있음. ▲▲▲▲▲는 제공이 중지된 서비스로, 각 링크는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됨. 즉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하여 제공되는 악보는 2분의 1쪽 가량의 피아노 채보 미리보기가 전부임.

음악저작물은 악보로 작성되어 고정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악보 그 자체는 음악저작물의 고정수단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독립한 저작물이라 할 수는 없음. 다만 피아노 연주를 위한 편곡행위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의 악보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채보자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채보된 악보는 합법시장으로 보이는 악보 판매 사이트의 악보와 상이함.

이 악보가 원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면, ①일반적으로는 원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이용 분량은 확인할 수 없는 점(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②개인이 피아노 연주를 목적으로

채보하고 실제 연주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기록이 있는 점(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③ 개인이 피아노 연주를 목적으로 직접 채보한 악보가 원저작물을 대체할 가능성은 없으며, 합법 악보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임.

한편 유사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제2019-46회 시정권고 심의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악보가 해당 곡 또는 채보한 악보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일반인이 신고한 건으로 권리자가 직접 게시자를 상대로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한 바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하였던 악보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거나, 저작권 침해라고 하여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는 부적합하다 할 것임.

이 악보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이 채보한 악보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하는 행위는 원저작자 및 채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시정권고 적합성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시자는 악보의 2분의 1쪽 가량을 미리보기 형태로 복제·전송하고 있으며, 악보의 전체 분량은 알 수 없음. 합법 사이트에서는 총 7쪽으로 편곡된 악보 중 1쪽이 조금 넘는 분량을 미리보기로 제공 중임. 채보자의 ★★★★★ 채널로 출처가 표시되

어 있으나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되어 악보가 무료로 제공되었는지, 이용허락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악보 전체는 단축링크 서비스인 '▲▲▲▲▲'를 통한 ◆◆◆◆ 링크로 제공하였으나 현재 이용이 불가능함. 현재 게시자는 다른 자료에 대한 ◆◆◆◆ 링크만을 직접 제공하고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악보의 경우 ◆◆◆◆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2분의 1쪽에 불과한 악보의 복제·전송은 시장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독립적으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직접링크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로의 직접링크가 제공된 경우 저작권 침해의 방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권고를 의결하고 있음. 해외 서버인 ◆◆◆◆의 직접링크의 경우 원천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할 수 없으므로 국내의 링크게시물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다만 채보자의 일반적 또는 개별적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권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권리자가 직접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점, 현재 매개가 되는 단축링크 서비스가 폐쇄되어 미리보기 분량인 2분의 1쪽 이상의 악보를 이용할 수 없는 점, 게시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링크를 복구하지 않아 사실상 자의로 저작권 침해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부결 의견).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9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이 블로그가 공개형 블로그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개형 블로그임.
- B 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이 블로그의 음악 카테고리의 게시물 중 하나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두 번째에 있는 '□□□□□' 1건임.
- B 위원: 민원인이 불법복제물 신고를 할 때 권리자 해당 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권리자는 저작물 보호 요청을 할 수 있고, 불법복제물 신고 시 권리자임을 별도로 밝혀서 신고할 수도 있음.
- A 위원: 권리자가 직접 신고 시 심의의 필요성이 없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권리자가 사전에 저작물 보호 요청을 한 경우, 민

관협력 관계가 체결된 웹하드에 대해 심의없이 신속히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조치 비대상 웹하드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시정권고하고 있음.

- B 위원: '□□□□□' 원곡을 들어볼 수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 원곡과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피아노 곡에 직접 접속하여 들려주면서) 지금 재생되는 곡이 원곡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별도로 게재된 피아노곡은 심의대상인 악보와는 다른 것이기는 하나, 참고로 비교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이 심의 안건의 주된 관점이 첫째, 게시된 악보 자체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지이고, 둘째,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 악보의 일부를 게시한 행위가 시정권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참고로 2019년도의 유사 사례에서는 해당 악보 전체의 다운로드가 가능했었음.
- A 위원: 이 악보를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시정권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현재 채보한 악보의 2분의 1쪽 정도밖에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B 위원: 이 건은 '채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해당 음악을 귀로 들어서

악보를 작성했다는 의미이므로 공정이용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어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개인 연주자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악보에 비하여는 이용허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명확한 확인은 어려움.

- A 위원: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악보의 전부를 게시하지 않았을지?

- B 위원: 원래는 해당 악보 전체를 게시했었는데, 사이트 구조가 바뀌면서 그 중 일부인 미리보기 부분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로 보임.

- C 위원: 검토보고서 상에서 좌측 악보와 우측 악보가 같은 것인지?

- B 위원: 좌측은 꾸밈음, 당김음 등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다른 연주자가 연주한 것을 채보한 악보이고, 우측이 원곡의 악보인 것으로 추측됨.

- 오진해 전문위원: 우측은 피아노용 악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것임. 해당 사이트는 상업적 사이트이므로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편곡을 했을 것으로 보임. 좌측과 우측은 같은 곡을 다르게 채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거나 합법시장의 대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게시물이 악보의 극히 일부를 제공하고 있고 직접링크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이견 없음.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9번에 대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0번은 익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카페 이용자가 자유게시판에 게시글 게시 후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음원모음집을 보내주겠다고 한 사안임. (순번 1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보호원에서 게시물의 댓글을 확인한 결과, 총 1,900곡의 음원을 44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이메일 전송은 마감한 것으로 보임.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과 같은 직접증거 없이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할 수 있음. 다만 직접증거 없이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 전송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한편,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에게 반복하여 동일 저작물을 발송하는 행위가 불법복제물의 전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이용 제공하는 경우라야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이메일로 특정한 개인에게 저작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저작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의 전송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게시물 자체가 불법복제물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게시물에 대한 댓글과 답글을 살펴보았을 때, 저작권법상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수 있을 것임. 한편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전송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언제든지 같은 방법을 통한 전송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타당성 또는 필요성이 인정됨(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기존에 전체회의에서도 유사사례를 다룬 적이 있었던 것으

로 기억함.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유사사례를 다룬 적이 있었음.
- B 위원: 불법복제물 전송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게시자가 게시글에서 해당 음원의 제공일시를 '◀◀◀◀◀◀'까지로 한정하고 있고, 실제로 댓글 채증자료 끝부분에 보면 게시자가 음원 제공 종료의 의미로 '끝'이라고 기재하고 있음. 물론 해당 음원 모음집에 대한 추가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지 전송이 재개될 가능성은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11번~54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

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게임,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온앤오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65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온앤오프'를 9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22분 20초를 제공하고 있음. tvN에서 2020. 5. 2. ~ 2021. 5. 25.까지 방송한 45부작 예능 프로그램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게임 '호라이즌 제로 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92번은 웹하드에서 게임 '호라이즌 제로 던'을 5,440포인트에 제공 중임.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에서 2017. 2. 28. 공개한 액션 게임임. 스팀에서 51,000원에 정식이용이 가능함.

(방송 '마우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01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마우스'를 83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15화 전체분량인 1시간 15분 43초를 제공하고 있음. tvN에서 2021. 3. 3. ~ 2021. 5. 19.까지 방송한 20부작 드라마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11번~546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1번~546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1번~54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60592호(순번 9번)는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60584호~60591호(순번 1번~8번), 제2021-60593호~61129호(순번 10번~54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8쪽부터 22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단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5555호~6023호, 제2021-6121호~6238호는 구
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하고, 제2021-6024호~6120호에 대해서는 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6. 10.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